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스웨덴과 독일이 각각 '18.6.15일, '18.6.20일경 고병원성 AI 청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웨덴을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독일을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단, 행정예고 중 수출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 유지
3. 관계부서(기관)에서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8.6.24(일)까지 우리부(과)에 아래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과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국제협력총괄과장, 축산경영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위험평가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지실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검사관리과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주한스웨덴대사, 주한독일대사, 주한유럽연합대표부대사, 외교부장관(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주무관 신세린 사무관 홍기욱 검역정책과장 정병곤 전결 2018. 6. 5.

협조자

시행 검역정책과-2374 (2018. 6. 5.)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076 팩스번호 044-868-0449 / srs0628@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